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03

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 박범계·정정순·황운하

장철민 • 이수진 • 이원욱

허 영·홍익표·황 희

어기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,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·제출 및 신고·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. 또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,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.

그런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기준금액은 1999년 법 개정으로 4,800만 원으로 정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번도 변경되지 않아, 물가상승 및 인건비·원자재 구입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고, 최근 코로나-19의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라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

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6백만 원으로 인상하고,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,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제1 항 및 제69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4천800만원"을 "9천600만원"으로 한다.

제69조제1항 본문 중 "3천만원"을 "5천만원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 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 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(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, 이하 "공급대가"라 한다)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9천600만원-----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생 략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69조(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제69조(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의 면제) ① 간이과세자의 의무의 면제) ① -----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 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 -----5천만원-----

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
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
의무를 면제한다. 다만, 제64조
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
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~ ④ (생 략)

,
② ~ ④ (현행과 같음)